

가입비등 [] 반환 요청서
[] 지급 요청서

※ 어두운 난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며, 아래의 주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신청인 (모집주체)	조합명		
	대표자		
	주소(사무소)		전화번호
요청내용	요청사항 [] 반환 [] 지급		
	요청사유 청약철회 계약 체결 후 30일 경과		
가입비등	₩ (금 원 정)		
예치번호/예치일			
입금 계좌			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3항·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비등의 반환 또는 지급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예치기관의 장
(지점장) 귀하

첨부서류	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예치기관 주의사항

- 예치기관의 장은 모집주체가 조합가입신청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반환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반환해야 합니다.
- 예치기관의 장은 모집주체가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 다만, 모집주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가입비등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모집주체에게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.